

서울시 애완동물의 사육실태와 건전한 사육을 위한 정책방향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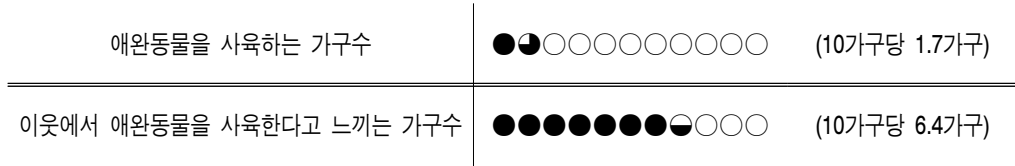
- 서울의 애완동물 사육실태
- 애완동물로 인한 피해 경험
- 애완동물의 등록제에 대한 의견
- 애완동물의 예방접종증명서 및 인식표 부착에 관한 의견
- 애완동물의 출입금지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
- 애완동물의 동반방법에 대한 규제와 규제대상 공원의 범위에 관한 의견
- 애완동물 관련 정부대책에 대한 인지도
- 설문조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애완동물의 건전한 사육을 위한 정책방향

서울의 애완동물 사육실태

- 애완동물관리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서울에서는 현재 약 80만 마리의 개나 고양이가 사육되고 있으며, 앞으로 사육을 희망하는 가구까지 포함하면 장래에 1백만 마리가 사육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분실에 대비하여 인식표를 부착하는 등 남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2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17.2%(6가구당 1가구)가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으며 비사육자의 5%도 사육의 사가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장래에 사육가구는 5가구당 1가구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이웃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하고 있다'는 설문에 64%가 응답한 것은 애완동물사육이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고 사육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음.(<그림 1> 참조)
 -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개 1.3마리 또는 고양이 1마리 정도를 사육하며 월평균 4만6천 원 정도의 사육비용(사료, 치료, 예방주사 비용 등)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때 연간 3천5백 억원 정도의 연관산업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1) 본고는 2004년 4월에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에서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완동물 관리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정책적 시사점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

- 본인이나 가족이 좋아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경우가 77%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동물의 유기 등 사육을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선물로 받는 등의 이유에 의해 기르는 경우도 23%에 이르고 있어 신중한 사육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육결정단계에서부터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림 1> 애완동물 사육가구와 체감 사육가구의 비교

애완동물로 인한 피해 경험

- 조사대상자의 52%가 이웃에서 사육하는 애완동물에 의해 소음, 냄새, 공포감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데 그 중에는 음식물 훼손과 같은 개인적인 피해와 함께 쓰레기 봉투훼손, 교통사고 유발 잠재력 등 공공적인 피해도 포함되어 있음.
- 설문조사에 따르면 52%가 이웃 또는 자신이 기르는 애완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비사육자의 59%, 사육자의 21%가 피해를 입었다고 함. 피해의 유형은 대부분 소음, 냄새, 공포감 등으로 직접적인 상해를 입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음.
- 또한 응답자의 53%가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와 고양이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음식물이나 쓰레기봉투의 훼손(62%), 오물의 배설(43%), 소음(30%) 등을 피해사례로 지적하였으며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11%)하기도 함(이상 복수응답임).

애완동물의 등록제에 대한 의견

- 애완동물 판매업자 등록제의 시행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사육자 등록제에 대해서도 비사육자는 물론이고 사육자의 다수가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함.
- 전체적으로 사육자 등록제에 대해 63%, 판매업자의 등록제에 대해 79%의 응답자가 그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판매업자 등록제의 필요성을 많이 공감함.

- 사육자 등록제에 대해서는 비사육자와 사육자 사이에 의견차이를 보이는데 비사육자의 경우 68%가 공감하는 반면 사육자의 53%는 도입을 반대함. 그러나 사육자 중 42%가 사육자 등록제의 도입을 지지함을 볼 때 많은 사육자들이 건전한 사육풍토의 조성을 바라고 있다고 판단됨.(<표 1> 참조)

<표 1> 애완동물 등록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1,000명)

등록제 종류	응답자 속성	응답내용 (%)			
		필요	불필요	무응답	계
사육자 등록제	전체	63	33	4	100
	비사육자	68	28	4	"
	사육자	42	53	5	"
판매업자 등록제	전체	79	18	3	"
	비사육자	80	17	3	"
	사육자	72	24	4	"

애완동물의 예방접종증명서 및 인식표 부착에 관한 의견

- 광견병과 같은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주사의 접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증명서를 애완동물에게 부착하는 방안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88%가, 분실동물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식표 부착에 대해서는 79%가 찬성함.
 - 광견병과 같은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은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한데, 접종증명서를 애완동물에게 부착하여 접종사실을 확인하는 체계에 대해 비사육자의 91%, 사육자의 74%, 전체 88%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함.
 - 애완동물 인식표는 동물의 분실이나 탈주시에 사육자를 찾아줄 수 있고 등록제를 실시하는 경우 등록여부의 확인이 용이함. 비사육자의 82%, 사육자의 66%, 전체 79%가 인식표 부착의 필요성을 인정함.(<표 2> 참조)

<표 2> 애완동물의 예방접종증명서 및 인식표 부착 의무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조사대상자: 1,000명)

증명서 종류	응답자 속성	응답내용(%)			
		필요	불필요	무응답	계
예방접종증명서	전체	88	11	1	100
	비사육자	91	8	1	"
	사육자	74	26	0	"
애완동물 인식표	전체	79	20	1	"
	비사육자	82	17	1	"
	사육자	66	34	0	"

애완동물의 출입금지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

- 음식점, 백화점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다중집합공간에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음.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비사육자의 경우도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며(출입금지 58%, 출입허용 42%), 출입금지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 보유 공원, 어린이 전용공원에서 우선적으로 출입을 금지시키자는 의견이 많음. 반대로 근린공원, 다목적 공원 등은 출입규제를 완화해야할 공원이라는 의견을 보임.
 - 음식점, 백화점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시설 또는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애완동물의 출입 금지에 대하여 비사육자의 92%, 사육자의 82%가 찬성의사를 보임. 전체적인 찬성의사는 90%에 이룸.
 - 휴식, 운동, 생태보호와 관찰의 기능이 있는 근린공원, 생태공원 등에서는 비사육자의 58%(허용의견 42%), 사육자 31%(허용의견 69%), 전체 53%(허용의견 47%)가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음.
 - 공원시설 중에서 애완동물의 출입을 우선적으로 금지해야할 공원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있는 공원(24.9%), 어린이 전용공원(22.8%) 등을 꼽고 있으며, 남산, 한강시민공원 등 휴식, 운동, 관광 또는 다목적 기능을 가진 공원은 출입금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았음(<표 3> 참조).

<표 3> 애완동물의 출입금지지역 지정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조사대상자: 1,000명)

구역	응답자 속성	응답내용(%)		
		출입금지	출입허용	계
음식점, 백화점 등 대중이용과 위생관리가 필요한 시설	전체	90	10	100
	비사육자	92	8	"
	사육자	82	18	"
근린공원, 생태공원 등 휴식, 운동, 생태관찰 공원시설	전체	53	47	"
	비사육자	58	42	"
	사육자	31	69	"
출입금지가 필요한 공원의 우선순위(복수응답)	전체	1. 탑골공원 등 문화재가 있는 공원(24.9) 2. 대공원 등 어린이 전용공원(22.8) 3.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공원(13.5) 4. 동물원 등 안전과 방역이 필요한 공원(12.3) 5. 남산 등 생활주변의 휴식공간(7.6) 6. 한강시민공원 등 다목적 공원(5.6)		

애완동물의 동반방법에 대한 규제와 규제대상 공원의 범위에 관한 의견

-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을 출입할 경우에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줄의 착용과 배설물의 회수(이하 동반방법이라 함)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애완동물의 비사육자는 물론이고 사육자의 절대 다수가 찬성의견을 보였으며, 동반방법을 준수해야할 공원의 범위에 주택가의 어린이놀이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을 출입하면서 동반방법을 위반할 경우에 사육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비사육자의 96%, 사육자의 87%가, 전체적으로는 94%가 찬성의견을 보임.
 - 애완동물의 동반방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원의 범위에 대해서 비사육자의 79%, 사육자의 57%가, 전체적으로는 75%의 응답자가 주택가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비록 사육자의 42%가 주택가 어린이놀이터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사육자들도 어린이놀이터에서 애완동물의 동반방법이 준수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4> 참조).

<표 4> 애완동물의 공원출입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조사대상자: 1,000명)

규제지역 및 방법	응답자 속성	응답내용(%)			
		부과	비부과	무응답	계
공원출입시 애완동물 동반방법을 위반할 때 과태료 부과	부과여부	부과	비부과	무응답	계
	전체	94	5	1	100
	비사육자	96	3	1	"
	사육자	87	13	0	"
과태료 부과 대상 공원의 범위	공원범위	소규모 공원 포함	소규모 공원 제외	무응답	"
	전체	75	24	1	"
	비사육자	79	20	1	"
	사육자	57	42	1	"

주 : 1) 애완동물의 동반방법이란 안전줄을 매고 배설물을 스스로 치우는 것을 말함.
 2) 소규모 공원이란 주택가, 공동주택지역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등을 말함.

애완동물 관련 정부대책에 대한 인지도

-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가 지정한 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출입할 때 동반방법(안전줄 착용과 배설물 회수)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 비사육자는 물론이고 사육자의 다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공원 출입시 동반방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서울시의 애완동물 관리대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46%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비사육자의 57%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사육자의 경우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59%로 비사육자의 43% 보다 높았으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41%에 달하는 등 전체적으로 애완동물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5> 참조)

<표 5> 서울시 지정 공원출입시 동반방법 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인지여부 설문조사 결과

규제내용	응답자 속성	응답내용(%)		
		알고 있다	몰랐다	계
올해 하반기부터 공원출입시 동반방법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전체	46	54	100
	비사육자	43	57	"
	사육자	59	41	"

주 : 조사대상자 수는 1,000명임.

설문조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이제, 서울에서 사육되는 애완동물은 사육자 개인의 소유물만이 아니고 도시 또는 사회구성원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정도로 사육두수가 많고 그 사육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태임. 따라서 사육자, 비사육자, 애완동물의 판매 등 관련산업, 정부 등 사회 각 분야가 관심을 갖고 자신이 이행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애완동물이 건전하게 사육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 애완동물을 실제로 사육하는 가구수는 10가구당 1.7가구이지만 이웃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하고 있다고 느끼는 가구수는 10가구당 6가구를 넘어서고 있으며, 애완동물로 인하여 52%가 피해를 경험하고 정부도 유기동물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애완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애완동물을 사육하지 않는 시민들도 애완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는 등 사회전반에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시기임.
 -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과 계획을 갖지 못한 채 애완동물을 사육할 때 애완동물의 유기로 이어지기 쉽다는 외국의 조사사례와 애완동물 사육자의 23%가 선물 등에 의해 애완동물을 사육하고 있고 분실 등에 대비해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금번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애완동물의 사육검토에서부터 종생사육(終生飼育)을 염두에 두고 사육을 결정하도록 계몽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 사육문화를 새롭게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 사육자는 애완동물이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애완동물의 사육이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수반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함. 등록제, 인식표 부착, 출입금지지역 지정, 공원출입 규제 등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는 사회에서 바라는 관리수준과 필요한 제도를 제시하고 있음.
 - 서울에서 사육되는 애완동물의 수(개와 고양이에 한정)를 감안할 때 애완동물용 사료, 애완동물의 건강관리 등에 연간 3천5백억원 정도의 관련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추정되며, 이러한 점은 관련 산업의 사업자들도 애완동물의 건전한 사육문화 정착에 일조를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애완동물의 건전한 사육을 위한 정책방향

- 종생사육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애완동물로 인한 질병의 전파를 예방하며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육자 등록제, 판매업자 등록제, 정기적인 예방접종 실시 등을 의무화함.
 - 판매업자의 등록제는 건강한 애완동물의 유통과 적절한 동물관리를 위해 필요함. 개나 고양이를 취급하는 애완동물 판매업자는 자치구청장에게 등록신고하고 자치구청장이 등록증을 교부하면 판매업자는 등록증을 업소에 게시해서 등록사실을 공개하도록 함.
 - 종생사육, 질병예방, 유기방지를 위해 사육자 등록제를 실시함. 개 중심으로 등록제를 실시하며, 위험개와 일반개로 분리하여 위험개부터 등록을 실시해서 일반개로 확대하도록 함. 등록업무는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단체에서 관장하도록 함.
 - 애완동물로 인한 질병의 전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 즉, 접종권고와 권고사항 미이행시의 벌금 부과 규정을 적극 활용함.
 - 애완동물(개) 사육자의 등록과 예방접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개에 등록증과 예방접종증명서를 부착하도록 함.
- 공중보건 확보와 동물로부터의 상해위험을 줄이기 위해 애완동물은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만 출입하며 출입할 경우에도 동물의 동반요령을 준수하게 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다수에게 피해가 없도록 함.
 - 식품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애완동물의 출입금지가 필요한 지역 : 식품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등
 - 어린이의 안전확보를 위해 애완동물(또는 위험개)의 출입금지가 필요한 지역 : 놀이방 및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 개의 목줄이나 배설물 회수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공원 : 조례상의 도시공원, 주택가의 어린이놀이터 등

- 정부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감안할 때 애완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육자, 일반시민 모두의 관심과 함께 사육 등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함.
 - 어린이 대상 애완동물 교육 :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애완동물에 관한 동물의 가치, 사육을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 사육을 할 때 사육자의 역할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호기심만으로 애완동물의 소유를 결정하는 행태를 줄이고 동물에 대한 존엄성을 인식시킴.
 - 동물보호센터의 교육기능 강화 : 포획된 동물 중에서 새롭게 분양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 그 분양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사육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또 다른 유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사회단체의 활용 : 동물관련 보호 및 애호단체, 수의사 단체 등을 활용하여 애완동물 사육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애완동물 관련산업의 사업자들과 연계시켜 재정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애완동물의 사육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함. 따라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시기에 각종 정책과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반 시민들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함.

유기영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157
keeyy@sdi.re.kr